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 토 보 고

< 노인학대범죄 처벌 등 관련 특례법 제정 >

■ 이진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96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제정안의 배경과 내용	2
2.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규율	7
3. 제정의 필요성	15
4. 제명 및 구성	19
5. 제1장 총칙	22
6. 제2장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34
7. 제3장 노인학대범죄 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35
8. 제4장 노인보호사건	55
9. 제5장 벌칙	77
10. 부칙	87
11. 종합의견	8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이견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3. 31.
3. 회 부 일: 2025.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함.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III.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배경 및 내용

가. 제정안의 배경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인학대처벌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노인학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이 부족하므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 7,503건 수준이던 노인학대 신고는 2024년에는 22,74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건은 2010년 3,068건에서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25%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였음.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사례 판정 사건(2010-2024) >

(단위: 건, %)

구 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연평균 증감
신고접수	7,503	9,340	10,569	12,009	15,482	16,973	19,552	22,746	8.24
학대사례*	3,068	3,424	3,532	4,280	5,188	6,259	6,807	7,167	6.25

자료: 보건복지부, 2010-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11-2025).

*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잠재사례)를 포함함. 다만, 2023. 7. 1. 이후 접수된 생활시설 등에서의 학대 신고접수 사건 및 2024. 1. 1. 이후 접수된 병원에서의 학대 신고접수 사건 중 잠재사례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함.

○ 노인학대가 증가하면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피해자 보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²⁾

- 노인학대범죄처럼 일정한 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등이 있음.

□ 유사한 취지에서 지난 제19대국회 및 제20대국회에서도 노인학대 범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1914797	박명재	2015.04.20.	-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노인에 대한 보호자의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및 노인학대치사 등을 노인학대범죄로 각각 정의함.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에 관한 신고의무를 부여함.
2000209	박명재	2016.06.14.	- 노인학대행위자의 격리,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함. - 노인학대행위자에게 접근 제한,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노인보호사건 절차를 마련함.

- 1) 노인학대범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는, 김홍래 등, 노인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현행 법규정의 문제점과 정립방향,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76집 (2022. 1.). 반면, 처벌 중심의 특례법 제정보다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개정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이미진, 한국 사회 노인학대(Elder Mistreatment) 현황과 정책 쟁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슈포커스 2021 (2021. 6.) 등이 있음.
- 2)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부재를 지적하는 취지의 기사로는, ‘노인 학대 ‘사각지대’... 처벌도 부실’, KBS (2024. 6. 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41230?sid=102> (2025. 11. 17. 확인); ‘코로나19로 노인학대 5.6%↑...’처벌·지원 강화 특례법 필요”, YTN (2021. 6. 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01806?sid=102> (2025. 11. 17. 확인) 등.

나. 제정안의 제명과 구조

□ 노인학대처벌법안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명 아래 총 5개 장(章) 60개 조(條)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제정안의 각 장은 총칙,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노인학대범죄 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노인보호사건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장의 개별규정은 「노인학대법」 등 노인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관하거나,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유사한 취지를 가진 법률을 참고하여 노인학대범죄에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구 분	내 용	유사 또는 관련 규정		
		노인	아동	가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1-2	§2	§2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3
◦ 제2장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4조	노인학대예방의 날	§6④		
제5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6-2		
제6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	§39-4		
제7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39-5		
제8조	금지행위	§39-9		
제9조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39-10		
제10조	조사 등	§39-11		
제11조	노인학대 등의 통보	§39-15		

구 분	내 용	유사 또는 관련 규정		
		노인	아동	가정
제12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39-16		
제13조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39-17		
제14조	위반사실의 공표	§39-18		
제15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39-19		
제16조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39-20		
제17조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39-21		
◦ 제3장 노인학대범죄 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8조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39-6	§10	§4
제19조	현장출동	§39-7	§11	
제20조	응급조치		§12	§5
제21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13-§24	§7-§8-2
제22조	임시조치의 청구		§14	§8
제23조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15	§8-3
제24조	보조인의 선임 등	§39-8	§48	§28
제25조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16	
제26조	준용		§17	
◦ 제4장 노인보호사건				
제27조	관할		§18	§10
제28조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19	§29
제29조	임시조치의 고지		§20	§29④
제30조	임시조치의 집행		§21	§29⑨ 등
제31조	임시조치의 변경		§22	§29⑩·⑪
제32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25	
제33조	조건부 기소유예		§26	§9-2
제34조	노인보호사건의 처리		§27	§9
제35조	검사의 송치		§28	§11
제36조	법원의 송치		§29	§12
제37조	송치 시의 노인학대행위자 처리		§30	§13
제38조	송치서		§31	§14
제39조	이송		§32	§15
제40조	보호처분의 효력		§33	§16

구 분	내 용	유사 또는 관련 규정		
		노인	아동	가정
제41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35	§18
제42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36-§37	§40-§41
제43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38	§43
제44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		§39	§44
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40	§45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41	§46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42	§47
제48조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47	§55-2
제49조	비용의 부담		§43	§48
제50조	준용		§44	
제51조	항고와 재항고		§45	
◦ 제5장 벌칙				
제52조	벌칙(노인상해·강요)	§55-2	§60	
제53조	벌칙(노인전문보호기관 업무방해, 폭행, 성희롱 등)	§55-3	§61	
제54조	벌칙(실종노인 미신고, 위계·위력 출입·조사 거부 등)	§55-4		
제55조	벌칙(임시조치 미이행, 보호처분 미이행 등)		§59	§63
제56조	벌칙(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57	§62	§64
제57조	가중처벌	§59-2	§6	
제5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64	
제59조	양벌규정	§60		
제60조	과태료(현장조사 거부, 신고의무 위반 등)	§61-2	§63	§66

* 일부 내용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유사

주: 1. 노인은 「노인복지법」, 가정은 가정폭력처벌법, 아동은 아동학대처벌법

2. 노란색 음영은 「노인복지법」의 유사·관련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이관하는 경우

2. 현행법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규율

가. 범죄로서의 노인학대

- 현재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규율되는데, 동법에서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등 행위’임(동법 제1조의2제4호).³⁾

그런데 「노인복지법」은 공통적 연령기준에 따라 ‘노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규정에서 해당 규정의 목적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이상 등 개별적 연령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동법 제25조, 제33조의2 등).⁴⁾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에서도 그 대상이 되는 노인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⁵⁾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⑨ (생략)

- 5) 다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작성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는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2017. 6. 3부터 법률 제14320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행위의 금지규정(제39조의9) 등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하게 되었음을 고려한 것임. 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5), xiii.

다만 동법은 처벌대상이 되는 각종 노인학대행위와 관련하여 65세 이상을 그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9조의9),⁶⁾ ‘노인 학대관련범죄’를 ‘65세 이상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해·폭행 등 일정 유형의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조의2제5호),⁷⁾

6)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위반행위는 제55조의2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 ③ (생략)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1의2. ~ 3. (생략)

7)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

동법에서 범죄로서 노인학대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와 그 밖의 금지행위 위반죄임.

○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관련범죄’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의 범죄임. 따라서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보호자의 범죄여야만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되고,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라면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노인복지법」에서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의미하므로(제1조의2제2호),⁸⁾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야만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8)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유형에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명예훼손·모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 등이 포함됨.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

구분	근거 법률	대상 범죄
가목	형법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
나목	형법	(존속)유기, (존속)학대 등
다목	형법	(존속)체포·감금, (존속)중체포·중감금, (존속)특수체포·특수감금, 체포·감금등치상 등
라목	형법	(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마목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바목	형법	명예훼손, 출판물등명예훼손, 모욕
사목	형법	주거·신체 수색
아목	형법	강요 등
자목	형법	공갈, 특수공갈 등
차목	형법	재물손괴등
카목	노인복지법	노인을 이용한 구걸, 노인에게 증여·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행위 위반
타목	기타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가목~차목의 범죄

-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노인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도 범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호자 아닌 사람이 범한 경우 노인학대관련범죄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범죄로서의 노인학대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다만, 동법 제39조의17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刑)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자 아닌 사람은 노인학대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⁹⁾

나. 노인학대사건 처리 절차

1) 노인학대사건의 신고

□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신속한 발견과 대응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의료인,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직무에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함(제39조의6제1항·제2항).¹⁰⁾

9) 「아동복지법」은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정의하고,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결 등.

10)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 이러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미이행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함(제61조의2제2항제2호).¹¹⁾

○ 한편, 신고의무를 이행한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장 및 신분 노출 금지가 인정되며(제39조의6제3항),¹²⁾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됨(제57조제4호).¹³⁾

- 이러한 신고자 보호는 신고의무자 아닌 사람이 노인학대사건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법률상 신고가 강제되는 신고의무자의 경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③ ~ ⑥ (생략)

- 11) 다만, 신고의무자 중에서 사회복지요원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지요원은 제외한다.

1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13) 노인복지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노인학대사건의 조사 및 수사

- 노인학대사건의 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범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39조의7).¹⁴⁾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입, 관계자에 대한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피해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인도할 수도 있음.
- 또한, 문제되는 노인학대행위가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그 범죄를 수사할 수도 있음.¹⁵⁾

14)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여야 함을

3)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와 판결

□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사건의 심리·판결 등에 관하여도 특례를 두고 있음.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이 피해노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고(제39조의8),¹⁶⁾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대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해당 기관에의 취업·노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여야 함(제39조의17).¹⁷⁾

밝히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16) 노인복지법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1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5. ~ 1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 ⑫ (생략)

3. 제정의 필요성

가. 검토의견

□ 현행 법체계에서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규율되고 있음. 그런데 동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 노인의 복리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범죄의 수준에 이른 노인학대를 수사·처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노인의 질환에 대한 치료·요양과 노후 생활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규율하는 것임(제1조).¹⁸⁾

- 다만, 본 바와 같이 노인의 복리를 위한 각종 학대행위의 금지,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전제로서 노인학대관련범죄 등 제한된 범위에서 범죄로서의 노인학대도 함께 규율하고 있음.

○ 또한, 많은 경우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므로, 범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음.¹⁹⁾

18)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상해·폭행, 유기·학대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를 의미함.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 이처럼 ‘범죄로서의 노인학대’는 일반 형사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가정 외부에서의 노인 대상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처벌법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노인의 경우 고연령으로 인하여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노인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범죄로서의 노인학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함.

○ 연령에 따른 범죄 대응능력 부족이라는 점에서는 노인이 아동과 유사한데,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하여 규율하는 외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범죄를 규율하고 있음.

舊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범죄로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특례를 규율하지 않았으므로, 범죄로서의 아동학대는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리되다가 2014. 9. 29.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 보호처분 등이 도입되었음.

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 라. (생략)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 파. (생략)

-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사례는 연도별로 부침이 있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4년에는 2010년과 비교할 때 1.91배 수준인 844건이 가정 외에서 발생하였음.

< 노인학대사례 발생장소(2010-2024) >

(단위: 건, %)

구 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연평균 증감
학대사례*	3,068	3,424	3,532	4,280	5,188	6,259	6,807	7,167	6.25
가 정	2,625	2,909	2,983	3,799	4,616	5,505	5,867	6,323	6.48
기 타**	443	529	549	481	572	754	940	844	4.71

자료: 보건복지부, 2010-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11-2025).

* 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부양, 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이나 갈등 등 학대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잠재사례)를 포함함. 다만, 2023. 7. 1. 이후 접수된 생활시설 등에서의 학대 신고접수 사건 및 2024. 1. 1. 이후 접수된 병원에서의 학대 신고접수 사건 중 잠재사례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함.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생활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의 이용시설, 병원, 공공기관 및 기타 시설을 모두 합산한 것

- 다만, 제정안과 같이 노인학대에 관한 처벌상의 특례법을 도입하는 경우 그 규율 대상인 상해·폭행, 유기·학대 등은 일반 형사범임에도 별도의 특례에 따르게 되어 형사법이 파편화될 수 있다는 점, 노인학대나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도리어 규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의 경우 가정폭력 등에 비하여 보호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최근 노인학대사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 한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노인학대사건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므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정 외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사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즉시 개입·조치할 수 있어 별도로 특례법을 제정할 실익이 낮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 있어 머지 않아 다수 인구가 특례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4. 제명 및 구성

구 분	내 용	주요 참고 법률		
		노인	아동	가정
제 명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제2장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노인학대예방의 날, 전문기관 등	○	-	-
제3장	노인학대범죄 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신고의무 등	○	○	○
제4장	노인보호사건: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	○	○
제5장	벌칙: 노인상해·강요, 실종노인 미신고, 과태료 등	○	○	○

주: 노인은 「노인복지법」, 아동은 아동학대처벌법, 가정은 가정폭력처벌법

가. 검토의견

- 제정안은 법률명을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을 참고 하되 일부 규정은 「노인복지법」으로부터 이관하여 그 내용을 구성 하고 있음.
- 그런데 제정안에 따른 제명이나 제2장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은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다르고, 소관 부처가 상이할 경우 법률의 집행·관리 역시 각각 이루어짐을 고려하면, 특례법을 제정하더라도 그 제명과 내용 등은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제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처벌에 관한 사항과 피해의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다루고 있음. 그러나 형사절차에 따르는 처벌 관련 사항과 복지적 성격이 강한 예방 및 보호 관련 사항은 별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

-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 등의 경우에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구 분		법률 제명	소관 부처
아동학대	범죄 처벌	아동학대처벌법	법무부
	예방·보호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가정폭력	범죄 처벌	가정폭력처벌법	법무부
	예방·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범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예방·보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스토킹	범죄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예방·보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 이는 각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리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도 상이함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제정안에서도 노인학대범죄와 그 처벌에 관한 특례만을
규율하도록 그 제명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체계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보건복지부는, 제정안이 기존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과 노인학대범죄의 형사절차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 적용의 명확성 측면에서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제명을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고 신고자 보호 및 형사처벌 등에 관한 조항만 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5. 제1장 총칙

가. 목적

제정안	참조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1조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노인학대 피해자의 보호·지원만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을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는 경우 안 제1조도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조문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조나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등이 있을 것임.

나. 정의

제정안	참조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2조제1호, 제53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호, 제57조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노인학대행위자”란 노인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

7. “학대범죄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 “노인보호사건”이란 노인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안 제2조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노인, 노인학대 등 법률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 법률과 같은 표현에도 불구하고 조문 구성상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 기존 법률에는 없으나 새로이 신설되는 항목 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조제1호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기존 「노인복지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정의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상으로도 범죄로서의 노인학대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2호는 ‘보호자’를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와 동일한 표현임.

그런데 「노인복지법」은 제1조의2제1호에서 부양의무자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제한하는데,²⁰⁾

²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안 제2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부양의무자가 기존 「노인복지법」보다 다소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²¹⁾²²⁾

○ 한편, 안 제2조제6호와 제7호는 넓은 의미의 노인학대의 피해자인 ‘학대피해노인’과 노인학대범죄의 피해자인 ‘학대범죄피해노인’을 구분하고 있음. 이는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범죄 피해자만을 정의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인데, 제정안이 형사절차와 함께 노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도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노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노인복지법」도 양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함.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1) 민법상 부양의무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포함됨.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한편,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일정한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때의 가정구성원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됨.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다. (생략)
 - 라. 동거하는 친족

그런데 제정안에서 ‘학대피해노인’이란 표현은 주로 제2장의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학대범죄피해노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을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 할 경우 ‘학대피해노인’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안 제2조가 정의하고 있는 각 사항 중 현행 「노인복지법」과 내용이 동일하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노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개념이 있음.

○ 안 제2조제3호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와 마찬가지로 ‘노인 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으로 규정하고 있음.²³⁾ 이는 ‘아동학대’에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지 않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태도와는 상이한 것임.²⁴⁾

23) 「노인복지법」은 정신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구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정신적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정신적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는 대신 정서적 학대로 통일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는, 강동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검토와 개선의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2015. 6.), 38.

24)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각종 폭력, 가혹행위 및 유기·방임만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음(「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3호).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노인학대와 아동학대의 개념 비교 ＞

구분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신체적	정신적*	성적				
노인학대	○	○	○	○	○	○	○
아동학대	○	○	○	-	○	○	○

* 노인학대의 경우 정서적 폭력도 규정되어 있음.

주: 1.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및 제정안에 따른 노인학대

2.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이러한 학대 정의상의 차이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와 ‘노인학대 관련범죄’의 범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4호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노인학대로서 상해·폭행 등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정의하고 있음.

구분	근거 법률	대상 범죄
가목	형법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
나목	형법	(존속)유기, (존속)학대 등
다목	형법	(존속)체포·감금, (존속)중체포·중감금, (존속)특수체포·특수감금, 체포·감금등치상 등
라목	형법	(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마목	형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바목	형법	명예훼손, 출판물등명예훼손, 모욕
사목	형법	주거·신체 수색
아목	형법	강요 등
자목	형법	공갈, 특수공갈 등
차목	형법	재물손괴등
카목	제정안	노인을 이용한 구걸, 노인에게 증여·급여된 금품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행위 위반
타목	기타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가목~차목의 범죄

이중 안 제2조제4호 카목은 안 제55조제1호, 즉 안 제8조제5호에 위반하여 노인에게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음.

아동에 대하여도 이러한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며, 나아가 처벌됨. 「아동복지법」 제17조제11호는 아동을 위하여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 제3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⁵⁾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나 아동학대관련범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²⁶⁾

25)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타목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면서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죄는 제외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는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정의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를 인용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태도와 달리 노인학대 관련 법률에서 노인학대의 범위에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동과 노인의 경제적 상황,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행위의 일반적인 태양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노인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재산적인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를 대상 범죄에 포함할 것인지는 다른 범죄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제4호에 의하더라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폭력적 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사기, 횡령, 배임 등 전형적인 재산범죄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안 제2조제4호 카목은 그 성격상 횡령, 배임 등과 유사한 재산범죄에 해당함에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할 경우 다른 유사한 범죄와 달리 규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격리,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나 상담, 교육 등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산적 범죄에 대한 조치·처분의 효과가 다른 폭력범죄 등에 대한 조치·처분의 효과와 동일할 것인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안 제2조제4호는 ‘노인학대관련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관련 범죄’라는 문언에 비추어 노인학대가 아닌 범죄도 포함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유사한 성격인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인학대범죄’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의 여러 조문에서도 ‘노인학대범죄’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 용어가 혼동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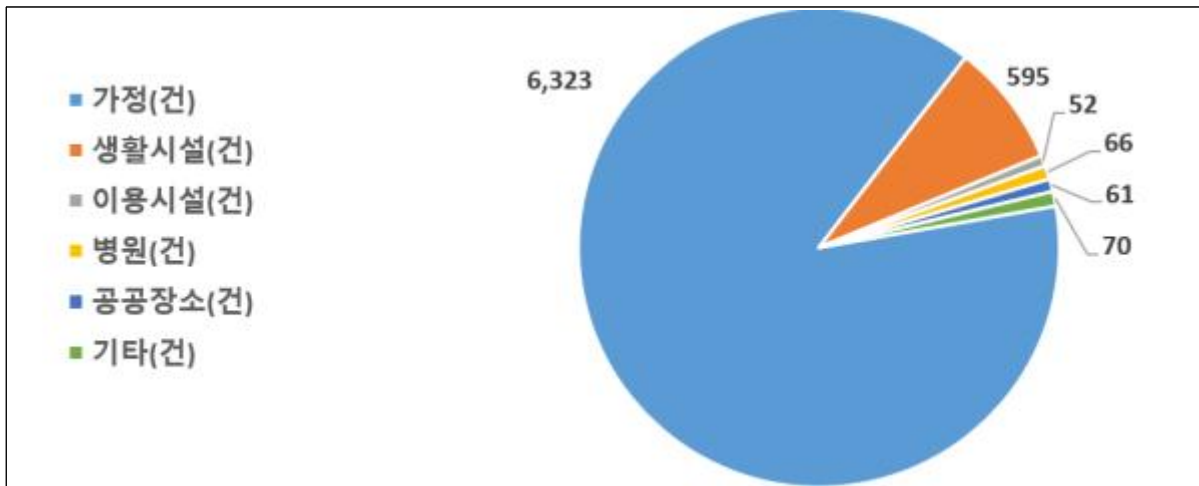
다. 다른법률과의 관계

제정안	참조 조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 안 제3조는 노인학대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인학대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가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한 것임.
- 다만,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노인학대범죄는 동시에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률 적용에서 가정폭력처벌법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24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학대사례로 판정된 노인학대 7,167건 중 전체의 88.23%인 6,323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 노인학대사례 발생 장소(2024) >



자료: 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5).

-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의 적용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 적용됨을 밝히고 있음.

6. 제2장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정안 중 제2장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의 각 규정은 기본적으로 현행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는 내용임.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학대예방의 날(제4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제5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제7조) 등이 장에 포함된 각 규정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아동학대의 경우처럼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 집행에서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2장에 포함된 각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7. 제3장 노인학대범죄 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가. 신고의무와 절차(제18조)

제정안	참조 조문
제18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정안	참조 조문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④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⑤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18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노인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분 노출 금지와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인정하는 것은 「노인복지법」뿐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등 각종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도 유사한데, 다만 신고의 시점이나 신고의무자 유형 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차이에 따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8조제1항·제2항은 신고의 시점을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제2항과 같은 태도이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등이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로 규정한 것과는 상이함.²⁷⁾

이러한 차이는 제정안이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뿐만 아니라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은 노인학대의 예방도 규율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안 제2조제3호에 따른 노인학대의 경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보다 외연이 넓은

27)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 27. (생략)

개념이므로, 적어도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만을 신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18조제2항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정안에서 노인이란 당연히 65세 이상의 사람만을 의미하므로, 안 제18조제2항 중 ‘65세 이상’ 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어서 삭제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8조제2항 각 호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표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미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발의 이후에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새롭게 추가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의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8조제4항은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를 선언하면서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이는 단지 불이익 조치의 금지만을 명시한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다르고,²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8조와 유사한 것임.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은 그 벌칙규정에서 안 제18조제4항 각 호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²⁹⁾ 처벌범위에 있어서는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안 제18조제4항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비하여 금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폭력방지법 제8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포괄적 성격의 금지를 두고 있음(동법 제8조제8호).

28)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는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 않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한편, 가정폭력처벌법은 아동학대처벌법처럼 일반적인 성격의 불이익 조치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³⁰⁾ 그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대신 「가정폭력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폭력처벌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규정 >

구분	제정안		성폭력방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금지	벌칙	금지	벌칙	금지	벌칙	금지	벌칙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 상실조치	○	○	○	○	○	○	○	○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인사조치	○	○	○	○	○	○	○	○
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재배치 등 인사조치	○	○	○	○	○	○	○	○
임금·상여금 등 차별적 지급	○	○	○	○	○	○	○	○
자기계발 기회 박탈 등 근무조건 차별	○	○	○	○	○	○	○	○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위해	○	○	○	○	○	○	○	○
부당한 직무감사·조사 및 결과 공표 등	○	○	○	○	○	○	○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	○	○	○	-	○	○

* 금지는 가정폭력처벌법, 벌칙은 가정폭력방지법

주: 1.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

2. 노란색 음영은 금지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30)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 ③ (생략)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20조(벌칙) ① 제4조의5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나.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제정안	참조 조문
제19조(현장출동)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 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응급조치)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노인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부터 제7조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사법경찰관리에 한한다. 1. 노인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노인학대행위자의 학대범죄피해노인으로부터의 격리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제정안	참조 조문
3.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노인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학대피해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긴급 치료가 필요한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의료기관에의 인도 5. 노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재발 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 6. 제4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7.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②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대범죄피해노인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학대범죄피해노인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가 학대피해노인을 인도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9조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7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범죄에 이르지 아니한 노인학대에 대하여도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므로, 안 제19조는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공무원만이 출동할 수 있게 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와는 상이함.

- 현행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에 상응하는 규정으로는 舊 「아동복지법」(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 있었음. 해당 규정 역시 공무원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³¹⁾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음.

- 다만, 2014년 당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및 「아동복지법」의 기타 규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에게 조사권한 등이 부여되어 있었고,³²⁾ 이후 공무원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31) 舊 아동복지법(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수사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타당성,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에 따른 집행 실효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임.³³⁾

-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법률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간 구조적 차이에 따른 문제라고 할 것임.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모두 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있는 것은 같으나(「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아동복지법」 제45조),³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32) **舊 아동학대처벌법**(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33)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024684호, (2020. 3. 4.), 법제사법위원장 제안,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024698호, (2020. 3. 4.).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수사와 밀접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이지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21121호 등) 검토보고 (2019. 11.), 77-78(법무부 의견 부분).

34)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조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장조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하고 이를 수행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반면(동법 제22조),³⁵⁾ 「노인복지법」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안 제19조는 출동요건을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신고가 아니라 노인학대의 신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8조 등에서처럼 범죄 또는 그 의심 신고에 국한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 ④ (생략)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2020. 4. 7.>
2. 삭제<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35)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본래 舊 「아동복지법」(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것임.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 ⑦ (생략)

□ 안 제20조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등을 참고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에서의 응급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응급조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학대행위자의 물리적 격리 등 강제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조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2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이러한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 「노인복지법」은 응급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현장출동의 경우처럼 舊 아동학대처벌법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으나,³⁶⁾ 2020년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36) 舊 아동학대처벌법(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 ⑥ (생략)

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정안	참조 조문
제21조(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노인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학대범죄 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노인학대범죄 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25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노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②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2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조사·수사 등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21조제1항은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후 검찰 송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규정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임.³⁷⁾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에서 검사로의 사건 송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송치가 이루어지나(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³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안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노인학대관련 범죄사건도 전건(全件) 송치의 대상이 될 것임.

37)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안 제21조제1항을 제외한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아동학대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등에서의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규율과 유사하며, 긴급임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인학대관련 범죄 행위자 등의 주거 등에서의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임.

구 분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요건	◦ 노인학대범죄 현장	◦ 노인학대관련범죄 재발 우려 & 긴급	◦ 노인학대관련범죄 재발 우려/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 조사·심리·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
절차	◦ 사법경찰관리 등 조치	◦ 사법경찰관 조치	◦ (사법경찰관 등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내용	◦ 노인학대관련범죄 제지, 노인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노인 보호시설 인도 등	◦ 노인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노인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중 일부를 인용)	◦ 노인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노인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상담·교육 위탁, 유치장 구금 등

- 한편, (긴급)임시조치 등에서도 아동학대와 차이 존재하는데,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긴급)임시조치의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등), 제정안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8. 제4장 노인보호사건

가. 관할

제정안	참조 조문
제27조(관할) ① 노인보호사건의 관할은 노인학대범죄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노인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 안 제27조는 노인보호사건의 관할을 가정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이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을 각각 가정법원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임.

또한, 가정법원 내에서도 단독판사가 노인보호사건의 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직분관할 및 사물관할 전반에 있어 아동보호사건 등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

나. 임시조치의 유형과 결정

제정안	참조 조문
제28조(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노인학대범죄의 원만한 조사·심리 또는 학대범죄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5.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6.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만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노인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5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노인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학대범죄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 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 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임시조치의 유형과 결정에 있어서도 제정안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피해자가 아동이 아님을 고려하여 임시조치의 유형에서 친권 제한 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 그 요건과 절차 등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유사함.³⁹⁾

□ 그런데 안 제28조제1항은 친권의 제한·정지 외에도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도 임시조치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제정안에서 노인은 성인이므로, 친권자가 없음은 명백함. 그러나 「민법」은 성인에 대하여도 질병, 노령 등을 이유로 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후견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⁴⁰⁾ 노인의 경우에도 후견인은 존재할 수 있음.

39) 다만, 안 제28조제7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통보 대상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외되어 있음.

40)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생략)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생략)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 ③ (생략)

- 특히 노령을 이유로 하여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는 피후견인이 제정안의 노인일 가능성이 클 것임.

이 경우 후견인에 의한 상해·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노인학대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를 임시조치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는 유효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임시조치의 집행·변경

제정안	참조 조문
제30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2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노인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아동학대 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노인학대행위자가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1) 검토의견

□ 임시조치의 집행·변경 및 취소에 관한 안 제30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도 안 제30조가 임시조치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여를 제외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유사함.

○ 안 제30조가 임시조치의 집행 시 통보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임시조치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21조).

이때 아동학대처벌법 제21조제4항의 적절한 조치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 변경 청구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임시조치 변경 청구는 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음(안 제22조제4항).

그런데 제정안은 임시조치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한 임시조치 변경 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정하면서도, 임시조치의 이행 상황 통지의 대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고 있어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임시조치 변경 청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라.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사건 처리

제정안	참조 조문
제33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노인학대 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노인학대행위자와 학대범죄피해노인과의 관계 3. 노인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가정보호의 필요성 5.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34조(노인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노인학대범죄로서 제33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안 제33조·제34조는 기소유예 및 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규정인데, 아동학대처벌법 등과 달리 보호사건 처리의 사유가 제한되어 있음.

○ 안 제33조는 기소 가능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노인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가정(家庭) 보호의 필요성, 피해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상담이나 치료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와 태도를 같이하는 것임.

그런데 안 제34조는 노인학대범죄로서 제33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할 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소 또는 처벌희망의사의 흠결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는 고소 흠결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노인학대행위자의 교정 등을 위하여는 고소 흠결 등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보호사건 처리는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안 제34조도 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등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¹⁾

41)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도 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와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마. 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

제정안	참조 조문
제42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행위자가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노인학대행위자가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5.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노인학대행위자, 학대범죄피해노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노인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1항제5호의 감호위탁기관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있어서도 제정안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 피해자가 노인임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유형에서 친권 제한 등을 제외하고 있을 뿐 그 요건과 절차 등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차이가 없음.

바. 보호처분의 집행·변경·취소·종료

제정안	참조 조문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③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노인학대행위자, 학대범죄피해노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노인학대행위자가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36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29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노인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의 집행·변경·취소·종료의 경우에도 제정안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제정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 등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의 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

○ 제정안은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임시조치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사. 피해자보호명령

제정안	참조 조문
제48조(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① 판사는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정안	참조 조문
② 법원은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노인학대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노인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그 밖에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 까지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정안	참조 조문
제50조(준용) 노인학대범죄의 사건 송치, 조사·심리,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노인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노인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학대범죄피해노인”으로, “가정폭력범죄”는 “노인학대범죄”로 본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련된 조문은 안 제48조와 준용규정인 안 제50조의 2개 조문이며, 해당 규정들은 제4장 노인보호사건에 배치되어 있음.

○ 그런데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구할 수 있어 보호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⁴²⁾ 안 제48조 및 제50조는 피해자보호명령과 관련된 내용의 극히 일부만을 직접 정하고 나머지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규율내용의 불명확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2)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모두 피해자보호명령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변경·취소, 그 기간의 제한 및 불복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입법례 >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장	주요 내용		장	내 용	
1	목적, 가정폭력범죄 등 용어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목적, 아동학대범죄 등 용어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가정보호사건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3	피해자보호명령		3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	
	§5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4	아동보호사건	
	§55-2	피해자보호명령 등	5	피해아동보호명령	
	§55-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46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55-4	임시보호명령		§47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 아동보호명령
	§55-5	이행실태의 조사		§48	보조인
	§55-6	병합심리		§49	국선보조인
	§55-7	준용		§50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55-8	항고와 재항고		§5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55-9	위임규정	§52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4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53	이행실태의 조사	
5	벌칙		§54	병합심리	
			§55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55-2	자료요청 및 면담	
			§56	준용	
			§57	항고와 재항고	
			§58	위임규정	
			6	벌칙	

주: 노란색 음영이 피해자보호명령의 장

아. 항고와 재항고

제정안	참조 조문
제51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28조의 임시 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2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노인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9조의 임시 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50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노인보호사건”으로 본다.	④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제정안	참조 조문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정안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불복은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안 제50조를 통하여 가정폭력 처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임.

그런데 피해자보호명령은 노인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노인 등에게도 권익 실현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는 직접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제5장 벌칙

가. 벌칙규정

제정안	참조 조문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폭행이나 협박으로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8조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7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정안	참조 조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사람 3.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5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3. 제4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4. 제1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노인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	참조 조문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8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8조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쳐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제정안	참조 조문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	
③ 제41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는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각종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이관하는 규정은 안 제52조·제53조 및 제54조이며, 아동학대처벌법과 유사한 내용을 신설하는 규정은 안 제55조·제56조 등임.

- 안 제56조제1항제2호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제2항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와도 밀접함. 특히 처벌의 전제가 되는 금지규정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제3항처럼 ‘신분 보장 및 신원 노출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안 제18조제3항).

구 분	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요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 노란색 음영은 같은 내용인 부분

□ 안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중에는 제2장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부분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안 제54조제2호 실종노인 미신고 등은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안 제9조제1항의 이관을 전제로 하는 것임.

□ 또한, 안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 중에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처벌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죄질과 보호법익 등이 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슷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56조는 비밀엄수의무 위반과 신고인 신분 노출 금지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에 따르면,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경우 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보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나. 가중처벌 등

제정안	참조 조문
제57조(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2조제1호, 제53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노인복지법 제59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8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2호,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인복지법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제3호, 제56조, 제57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노인복지시설 내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 노인학대와 관련된 처벌에 있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59조는 각종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적 감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규정이므로, 「노인복지법」을 통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동학대에서 안 제59조에 상응하는 규정은 「아동복지법」 제74조로서,⁴³⁾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43)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과태료

제정안	참조 조문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13조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노인복지법 제61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9조의17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8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노인보호사건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2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정안	참조 조문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노인복지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2.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④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아동학대처벌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안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규정 역시 「노인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참조한 규정인데, 여기에도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행정적 감독을 위한 사항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안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장의 해임 요구 미이행 등은 전형적인 행정적 감독 목적의 과태료 규정으로 판단됨.

10. 부칙

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14제1항제2호 중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를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4조”로 한다. 제39조의15부터 제39조의21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 본문 중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 안 부칙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으로부터의 이관 사항을 조정하거나 가정폭력처벌법과의 법률 적용 관계 등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안 부칙 제2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종합의견

- 제정안의 주요 검토 사항은 ① 노인학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것인지, ② 특례법을 제정한다면 그 규율 범위를 형사절차로 한정할 것인지, ③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유사 규정과 같게 또는 다르게 규율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임.
- 노인학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범죄의 증가추세, 피해노인을 위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도입의 필요성, 일반 형사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한 규율 가능성 및 특례법 제정에 따른 형사법의 파편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사건의 증가를 고려하여 노인학대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경찰청은 가정폭력처벌법 등 유사 법률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 특례법의 규율 범위를 형사절차로 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노인 복지법」으로부터 이관할 조문을 확정하는 것과도 관련되는데,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적용되는 법리와 소관 부처를 고려하여 ‘노인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하여 형사절차를 규율 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법체계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할 것임.

○ 보건복지부도 법률적용 측면에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제명을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한 다음 신고자 보호 및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만을 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과의 균형성 문제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 대상 조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051